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

– 금융감독원, 2021.3

◆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
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

◆ 또한,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

Ⅰ 추진배경

□ 코로나19감염증 유행*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결산,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, 감사보고서,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* 2.23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

ㅇ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·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(과징금 등) 대상이며,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.

Ⅱ 처리방안

(1) 기본 방향

□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,

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,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.

※ '20년 사업보고서(3월), 1분기보고서(5월), 반기보고서(8월)에 대해서도 기 시행

(2) 처리 절차

〈 신청 및 검토 절차 〉

1 신청 (3.8.~12.)	➡	2 신청서 검토 (금감원·한공회)	➡	3 증선위 의결(결정) (3.24.)

1 (신청)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(3.31.)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·감사인이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합니다.

〈 제재면제 신청방법 〉

① (신청기관)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→ 금감원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&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→ 한공회
※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
② (신청인)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
③ (첨부서류) 회사 신청시 감사인,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

○ 회사 신청시 감사인,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 ("신청서식" 붙임2, 3 / "신청방법" 붙임4 참조)

○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
① 신청기간을 3.8.~3.12.(5일간)로 운영합니다.
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·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*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**을 통해 공개됩니다.
*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〉 알람·소식 〉 공지사항
한공회 홈페이지(www.kicpa.or.kr) 〉 알림마당 〉 공지사항
** 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

〈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〉

기관명	신청 방법	담당자 연락처
금융감독원	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(eacrs. fss. or. kr)	02-3145-7975
		02-3145-7765
한국공인회계사회	이메일로 신청 (assu @ kicpa. or. kr)	02-3149-0175
		02-3149-0328

2 (검토) (1)~(2)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.

〈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〉

(1) 회사의 결산일이 2020년 12월 31일

(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① (회사) 주요사업장(자회사 등 포함)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,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

② (감사인)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·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

③ ①,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○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,
- ○ 감사인의 경우,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난 '20.12월 배포(금감원·한공회)한 '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'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.
- ○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·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 (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)

3 (의결) 3.24. 증권선물위원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

- ○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'21.1분기보고서 제출기한(5.17., 47일 연장)까지*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  - *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(한공회 심사대상)은 본래 제출기한인 4.30.에서 45일 연장된 6.14.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
    ②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4.30.에서 '21.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(5.31.)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
- ○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.

III 상법 시행령 관련 안내

□ 이번 정기주총부터 '20.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(제31조제4항)이 적용되어 주총 전 주주에게

사업보고서·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
○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, 주총(통상 3월)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

□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고,

○ 결산,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·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·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*

* 다만,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,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

붙임 1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&A

1.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결산 등이 지연되어,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경우, 「상법 시행령」 제3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·감사보고서 제공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?

□ 금융위원회(증권선물위원회)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*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**

* 동 내용은 금감원·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,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

** 다만,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

○ 결산,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·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·감사보고서를 제공(2주전 통지 · 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·홈페이지 게재)해야 합니다.

붙임 2 제재면제 신청방법

가. 금융감독원 신청방법(상장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)

① (접속) '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eacrs.fss.or.kr)' 로그인 후 '외부감사보고 바로가기' 클릭

③ (제출) '감사인 지정(재지정) 신청'에서 '신청사유를 기타'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

※ 문의사항: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(02-3145-7975, 7765)

나.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청방법

□ E-mail(assu@kicpa.or.kr)로 신청

○ 문의사항: 회원직무관리팀(02-3149-0171, 0175, 0328)